

#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기획경제위원회

'93. 8. 6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7월 30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7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93회 임시회

· 제1차 기획경제 위원회 (1993. 8. 6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 2. 제안성명 요지

( 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이 종 배 )

가. 제안이유

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, 제21조에 의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, 등록 재산의 심사와 결과 처리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구성 (안 제2조)

·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9명

· 5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

· 4명의 위원은 도 의회의원 2명, 도 소속 공무원 2명

○ 위원회의 기능 (안 제3조)

·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등

○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(안 제4조)

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(1차 연임 가능)
- 위 2년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재임기간,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
-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보고자 전문위원 안 창 국 )

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하고, 4명의 위원은 도 의회 의원 2명과 도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하여 구성함과

둘째,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그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

셋째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있어서 그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2년으로 하되 의회의원은 재임기간만을,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는등 그 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회의, 위원회의 간사, 수당, 위원회 운영규정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원활한 재산등록제의 실현을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 4인, 찬성 4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